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7.] [법무부령 제 959호, 2019. 10. 1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장구에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별로 기록하는 보호관찰카드에 보호관찰경력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7.] [대통령령 제 30127호, 2019. 10. 1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시납부하는 경우 감면되는 금액을 반영한 납부금액도 함께 기재하여 납부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17.] [대통령령 제 30125호, 2019. 10. 1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流入注意)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반입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17.] [대통령령 제 30129호, 2019. 10. 1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의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구조금의 산정기준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부패행위 신고 상담 및 접수,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신설(제58조제1항)

법률에 규정된 부패행위 신고 종결 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다.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결과 통보절차 정비(제59조 및 제60조제1항)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사항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

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부패행위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그 조사 및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음.

2) 앞으로는 위와 같이 신고사항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이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알리는 등 송부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함.

### 라. 부패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마.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마련(제6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진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을 지급 하도록 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할 때, 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그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하는 등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제69조 및 별표 1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대상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2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사.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74조, 제79조제2항 신설)**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함.

**아. 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구체적 포상 기준 등 마련(제88조의3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업무 및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의 대상을 규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 30124호, 2019. 10.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등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급여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의 범위에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 30118호, 2019. 10. 8.,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투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5백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만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 30110호, 2019. 10. 8.,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안관찰처분 면제 조건인 준법정신의 확립은 보안관찰 기간 동안의 범죄경력조회 등 객관화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 가능하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여 준법서약서 제출로 인한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없애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 30114호, 2019. 10. 8.,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해당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전통·문화·언어,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

를 위한 기본 소양 또는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의 체험 사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와 시청각 자료 등을 발간·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 30099호, 2019. 10.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16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 30104호, 2019. 10. 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일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의 분실·도난·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에 영상기록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 2858호, 2019. 9.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및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중 강제집행절차 관련 8개 조문 신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관련 1개 조문 신설, 1개 조문 개정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 관련 2개 조문을 각각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중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를 신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현금화·배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함(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

### 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의 근거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1조의2)

### 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집행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4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7조의2)  
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 30078호, 2019. 9. 17.,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알선 금지 명문화(제4조의2제1항)

공공입찰·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알선을 포함함.

### 나.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현행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제2항 삭제, 제52조제1항)

중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을 공사의 성질·규모 등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방법으로 공사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춤.

### 다.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현행 제15조 및 제43조제6항 삭제)

중전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대해 그 계약체결을 거부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 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공공 공사현장의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처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 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86조제6항제1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



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함.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